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단151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018. 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727,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27,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

가) C은 2010. 7. 9.경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이 D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자(이하 C이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을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이라 한다), D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0. 24.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C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19064호 양수금 사건), 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910,260원 및 그 중 2,001,557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2019. 12. 2.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021. 9. 8.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원금 잔액	인수 전 이자금액	인수 후 이자금액	합계
신용카드	2,001,557원	36,804원	1,736,794원	3,775,155원

2) 이 사건 제1 대출채권

가) E는 2016. 9. 23. C에게 500만 원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F는 2017. 5. 17. E로부터 이 사건 제1 대출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5. 18.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0. 26. F로부터 이 사건 제1 대출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1. 29.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대출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15884호 양수금 사건), 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6,516,543원 및 그 중 4,022,555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2019. 11. 25.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021. 9. 8. 기준 이 사건 제1 대출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원금 잔액	인수 전 이자금액	인수 후 이자금액	합계
무담보대출	4,022,555원	1,273,294원	3,265,527원	8,561,376원

3) 이 사건 제2 대출채권

가) G은행은 2016. 6. 10. C에게 1,5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출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6. 21.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 대출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3.경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대출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4832호 양수금 사건), 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3,308,372원 및 그 중 11,338,744원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2021. 4. 30.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021. 9. 8. 기준 이 사건 제2 대출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원금 잔액	인수 전 이자금액	인수 후 이자금액	합계
H (월수균등)	11,338,744원	-	13,174,361원	24,513,105원

나. 이 사건 분할협의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아산시 I 전 532㎡(이하 'I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I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J은 2017. 8. 29.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K이 있었다.
- 2) 피고와 C, K은 2018. 1.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I 토지를 K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8. 2. 2.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황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46,335,000원 상당의 대출채무¹⁾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0,205,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대한민국(국세청)에 대한 30,000,000원 상당의 조세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U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8. 1. 15.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지연손해금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을 체결한 E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고,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을 체결한 G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072호, 2016. 3. 3.)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7.9%라 할 것이고, 그 후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이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개인에 대한 최고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다시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연 20%로 각각 변경되었으나, 위 개정 시행령의 각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해당 시행령의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연 27.9%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등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 및 K의 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상속포기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포기는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8.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L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V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0. 2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8,181,1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또한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은 22,727,033원[= 68,181,100원 × 1/3(상속지분),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과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2021. 9. 8. 기준 원리금 합계액 36,849,636원(= 3,775,155원 + 8,561,376원 + 24,513,105원)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22,727,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위 22,727,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아산시 대 420㎡

2.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57.85㎡ 끝.

1) N카드 2,238,000원, O 6,525,000원(= 4,402,000원 + 2,123,000원), P 3,443,000원,
Q은행 4,841,000원, R 6,627,000원(= 2,150,000원 + 4,477,000원), S카드 9,382,000원,
T은행 13,279,000원